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8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1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3
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 명확화	8
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11

I. 이원택의원 대표발의(2200087)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3.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

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의2 신설, 제28조).

3. 검토의견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4조제2항 제6호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통계청이 2023년 5월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전년대비 10.1% 늘어난 5,082만 8,000원으로 집계되었음.

2022년은 쌀값 하락과 채소 수입 감소, 소 가격 하락, 비료비·사료비 증가 등으로 농업총수입(3,460만 4천원)에서 농업경영비용(2,511만 9천원)을 뺀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6.8%가 감소하기도 하였는데, 2023년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하며 1,114만원까지 상승하였음.

【표 1】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추이

(단위: 천원, %)

항목	'19	'20	'21	'22	'23	증감	증감률
농가소득	41,182	45,029	47,759	46,153	50,828	4,675	10.1%
○ 농업소득	10,261	11,820	12,961	9,485	11,143	1,658	17.5%
- 농업총수입	34,436	36,033	37,190	34,604	37,922	3,318	9.6%
* 농작물수입	23,299	24,534	25,997	24,986	27,557	2,571	10.3%
* 축산물수입	10,478	10,434	10,806	9,153	9,577	424	4.6%
* 농업잡수입	659	1,064	387	465	789	324	69.8%
- 농업경영비	24,175	24,212	24,229	25,119	26,779	1,660	6.6%
○ 농외소득	17,327	16,608	17,884	19,202	19,999	797	4.2%
- 겸업소득	5,828	4,930	5,507	6,296	6,767	471	7.5%
- 사업외소득	11,499	11,679	12,376	12,906	13,232	326	2.5%
○ 이전소득	11,230	14,263	14,809	15,245	17,188	1,943	12.7%
○ 비경상소득	2,364	2,337	2,105	2,221	2,497	276	12.4%

※ 자료 :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그러나 비료·농약·사료·광열비나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가 농업총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2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8.7%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야 함¹⁾.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그 추진계획,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1) 농업인신문, ““농업총수입 70%이상이 ‘생산비 외상치’...이래서야 농사짓겠나”, 2024.5.31.,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36>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4. 삭제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제21대국회 심사경과

개정안은 제21대국회 발의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883, 2023.8.18.)」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체회의 상정(2023.11.23.) 이후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2024.5.29.)

4) 검토의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고,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3.4.)」에서도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2】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과제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의 추진 방향

성과 목표	세부 추진 과제	실천계획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농업 재해 피해 지원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까지 확대,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해대책 지원단가 상향 조정 추진 등
	●농업 경영위험 대응	-소득정보에 기반한 농정 추진체계 마련,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 지원,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직접지불 제도 개편	●경영부담 완화 및 중소농 소득안정	-수입·매출정보에 기반한 경영안정프로그램 단계적 도입, 기본직불제 및 경영이양직불 개편 검토, 영농 정착 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선택직불제 확충	-전략작물직불 확대, 탄소중립직불 도입 등
농가 경영 여건 개선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 및 비료 가격 안정, 면세유 공급 및 세제 혜택 지속 지원,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 및 사료 구매지원 등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27년까지 정책펀드 1조원 이상 추가 조성 추진,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비농업계 참여 확대 등 추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 명확화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인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 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 법인의 육성) ----- ----- ----- ----- -----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 -----.

「농어업경영체법」은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경영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제정되었음.

제정 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는 「농어업경영체법」으로 이관되었음.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

【표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관련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3
설립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이 설립하고, 비농업인은 90% 까지 출자 가능
사 업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지 소유	○ 추가 요건 없이 농지소유 가능	○ 업무집행권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소유 가능 * 농지법 제2조 제3호
운영 현황	○ ('22년) 10,001개	○ ('22년) 16,103개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2024.8.2. 제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이 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의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 명칭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농가의 소득안정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7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이 도입하려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2005년 5월 전부개정('05.7.1. 시행)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5.1.1. 폐지)」에서 신설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5.1.1. 시행, 2020.5.1. 폐지)」에서도 운영된 위원회임.

당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여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음²⁾.

이후 동 위원회는 2019년까지 연간 1~2회 운영되다가, 2020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가 설치(2020. 5. 1. 구성)되면서 폐지되었음.

2) 법률 제7433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5.1.1. 폐지)」 제14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농림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로서 5인 이내
 - 나. 「소비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으로서 5인 이내
 -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5인 이내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4】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05년~'20년)의 개최실적 및 주요 논의사항

연도	횟수	주요 논의 사항
2006	2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방안 심의('06.3)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지급대상 지역별 지원금액 등 고정직불금 변경내역 심의('06.9)
2007	1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08~'1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심의('07.8)
2013	2	'13~'17년산 쌀목표가격 변경안 심의('13.2)
		'13년도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심의('13.5)
2014	1	'14년도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심의('14.3)
2015	2	'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변경('15.2)
		'15년도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심의('15.4)
2016	2	'16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16.1)
		'17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받고정 직불금 단가 심의('16.11)
2017	2	'18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받고정 직불금 단가 심의('17.1)
		'17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변경 심의('17.3)
2018	1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18~'22년산 적용 목표가격 변경안 심의('18.10)
2019	1	'19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농지의 받고정 직불금 지급단가 심의('19.1)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2024.8.2. 제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 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정부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제15조(정책심의회)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안전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7.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사항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 검토의견

개정안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농가의 소득안정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포괄적·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문을 두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을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현재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본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단가체계, 준수사항 등의 설정과 변경 관한 사항
- 2의2.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 및 선택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자격, 지급요건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환경부차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농업인단체의 대표 5명 이내 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대표 및 언론인 5명 이내 다. 농업 및 경제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명 이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414